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60 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 백종헌·유용원·서천호

조경태 · 김예지 · 진종오

정성국 · 곽규택 · 박정하

정희용 · 이헌승 · 김용태

김상욱 • 박준태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, 시술인 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.

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항 중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11조(난임극복 지원사업) ① 국	제11조(난임극복 지원사업) ①			
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				
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				
한 지원을 <u>할 수 있다</u> .	<u>하여야 한다</u> .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	